

발생한 날

차.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
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
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
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
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
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:
그 사유가 발생한 날

카.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
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
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
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
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
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
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
우: 그 사유가 발생한 날

7.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
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
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
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
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
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
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
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: 그 사
유가 발생한 날

8.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
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
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

<신 설>

<신 설>